



의안번호

제74호

논산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 출 자	논산시장
제출연월일	2018. 8. 28.

논산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74호
----------	------

제출연월일 : 2018. 8. 28.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1. 제안이유

- 「지역보건법」 제11조,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치매관리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논산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치매안심센터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안 제5조)
- 나. 치매안심센터의 이용제한 규정 마련(안 제6조)
- 다. 지역사회 치매협의체 구성과 운영기준 마련 및 기능에 대하여 명시 (안 제7조, 안 제8조)
- 라.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근거 마련(안 제1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16조의2, 「지역보건법」 제11조, 「치매관리법」 제3조, 제17조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2)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 3)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 아님
 - 4)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
 - 가) 예고기간 : 2018. 6. 7. ~ 2018. 6. 27.(20일간)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5) 비용추계서 : 붙임 참조

6) 충청남도 소관 실적 : 복지보건국 건강증진식품과(☎041-635-2655)

□ 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논산시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안심센터란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상담센터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위치)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질환 검진 및 예방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논산시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치매안심센터의 위치는 논산시 관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치매안심센터 운영) ① 치매안심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

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제5조(업무)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상담 및 교육, 홍보, 정보제공 등에 관한 업무
2. 치매 조기검진 및 예방관리사업
3. 치매환자 등록·관리

4.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
5.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6. 치매관련 지역사회 자원 인프라 강화에 대한 업무
7.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이용 제한) 시장은 센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센터 이용에 따른 질서를 지키지 않는 치매환자
4. 그 밖에 시장이 센터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역사회 치매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역사회 치매협의체(이하 “치매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치매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제외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치매관련 전문가, 치매관리사업 수행 기관·단체의 임직원, 관계공무원 등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치매협의체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부득이한 경우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⑥ 치매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치매안심센터 직원 중에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신건강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치매협의체 기능) 치매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안심센터의 운영·치매관리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자문
2. 치매안심센터의 운영·치매관리사업 평가에 대한 자문
3. 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협력에 관한 자문 등

제9조(치매협의체 수당 등) 치매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보건위생과장	한 미 옥
	정신건강팀장	한 성 희
	담 당 자	김 태 숙 (746-6920)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9조(치매협의체 수당 등)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지역사회 치매협의체 위원 참석수당 지급

나. 추계결과

- 치매협의체 수당 지급

- 치매협의체 참석수당

지역사회 치매협의체 100,000원×7명×2회×5년= 7,000천원

3. 작성자

보건위생과장 한 미 옥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시 비							
세 출	1,400	1,400	1,400	1,400	1,400	7,000	
201-01 사무관리비	1,400	1,400	1,400	1,400	1,400	7,000	
○ 치매협의회체 참석수당	1,400	1,400	1,400	1,400	1,400	7,000	
재원 조달	1,400	1,400	1,400	1,400	1,400	7,000	
의존 재원	소 계	1,120	1,120	1,120	1,120	1,120	5,600
	보 조 금	1,120	1,120	1,120	1,120	1,120	5,6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80	280	280	280	280	1,400
	지 방 세	280	280	280	280	280	1,4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4.1.]

□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2.3.>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 가.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 라.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 기능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치매관리법」

-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5.1.28.)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 제17조(치매상담센터의 설치) ①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센터(이하 “치매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치매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2.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3.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4. 치매환자 및 가족 방문·관리
 5. 치매조기검진
 6.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